

디지털시대의 공공기록평가에 관한 정책적 고찰*

영국 TNA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 Records Appraisal Policies in the Digital Age
: Based on the Case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UK

김유승(Kim, You-seung)**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디지털 시대의 기록평가
 - 1) 평가 개념의 확장
 - 2) 평가 시기의 이동
 - 3) 평가 방법의 변화
 - 4) 평가 주체의 확대
4.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
5.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 분석
 - 1) 일반 평가 기준
 - 2) 운영선별정책
 - 3) 평가 프로세스
6.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
7. 맺는 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6149).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 투고일: 2019년 10월 01일 ■ 최초심사일: 2019년 10월 02일 ■ 최종 확정일: 2019년 10월 15일

■ 기록학연구 62, 5-39,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2.005>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같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합한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주제어 : 거시 평가, 디지털 기록, 영국 국립기록원, 운영선별정책, 평가 정책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alternatives through case analysis in the UK, which is quickly responding with appraisal policies and guidelines appropriate to the digital age. Through a theoretical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appraisal in the digital age was extended to decisions on which records to be created and acquired, and in this context, that the value of records needed to be determined at the earliest point in their life cycle. Furthermore, the advantages of macro-appraisal methods and the inevitability of expanding appraisal groups were outlined.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change in the British public record appraisal policy was discussed from a policy

perspective, and the current British public record appraisal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policy statements and guidelines, general appraisal criteria, 60 operation selection policies and appraisal processes were discussed. As a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alternatives to appraisal policies in the digital age.

Keywords : Macro appraisal, digital records, The National Archives, operational selection policy, appraisal policy

1. 시작하는 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27조는 공공기관이 기록을 처분하려 할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기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41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관리법」 전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언급되는 유일한 대목이다. 이 한 줄의 규정이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첫번째 임무는 기록의 평가다.

평가는 기록전문가의 핵심 업무다. 기록정보의 가치를 분석하고 선별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기억과 경험을 후세에 전달하는 일은 기록전문가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다(Williams 2006, 38).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근간이 될 이론과 규범은 아직 완성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평가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적합한 평가의 시기가 언제인지, 평가에 참여하여야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다매

1)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체, 분산환경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록 평가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더욱 무거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기록 평가의 개념, 시기, 방법, 주체의 변화를 살피고, 전통적 평가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공공기록 평가를 주제로 한 국내 초기 연구로는 평가이론과 법령 규정을 병렬적으로 분석한 김명훈(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을 재검토한 이승억(2002), 독일 기록관리 이론의 역사를 평가론 중심으로 개괄한 김현진(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연구들은 정책적 측면에 중점을 둔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서은경(2005)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가기록평가정책을 정책목적, 평가목적, 평가기준, 평가절차, 특별고려사항 등 5가지 항목으로 비교 분석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명훈(2008)이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별 영구보존기록 평가체제 개편을 고찰하였으며, 최재희(2012)가 “주요 외국의 기록물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한 바 있다.

이후, 이론연구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를 넘어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성과가 뒤따랐다. 설문원(2013)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들과의 집단 면담 및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통해, 단위과제 기반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다중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최재희(2014)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기록평가제도와 실무 현황을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으로 분석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방식과 평가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ISO15489의 개정은 기록평가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김명훈(2018)은 “기록 평가의 표준화: ISO 15489 개정판에서의 평가 원리 및 절차 분석”을 통해,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하고,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원(2018)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연구에서 ISO 15489에서 채택한 새로운 평가 개념에 입각해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성의 관점에서 기록평가제도의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한편, 거시평가에 대한 국내 학술성과로는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기본으로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 수립분야 공공기록에 거시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이승억(2006)의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 적용 시론”과 캐나다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 실무 과정을 살펴본 나영선(2008)의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연구”가 있다.

본 연구가 집중하는 영국의 기록평가에 관한 연구는 최재희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재희(2015; 2017)는 대량동종 기록물 선별을 위한 영국 국립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정책을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젠킨슨으로부터의 영국 공공기록 선별체계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다만, 두 연구는 영국 정부의 ‘운영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y, 이하 OSP)’등 평가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된다.

기록평가에 관한 최근 연구는 공공기록 평가의 시민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경래(2019)는 “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 공공기록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 기반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능동적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 도큐멘테이션’ 모형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3. 디지털 시대의 공공기록평가

1) 평가 개념의 확장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용어사전』은 기록의 평가를 “현용단계가 종료된 후 기록을 보존 기록관으로 이관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 요건 및 활용 필요성에 따라 특정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과 “기록에 대한 금전적 가치” 등을 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TNA(2013d, 3)는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을 구분하고, 가치를 잃은 기록을 제거해내는 과정으로 평가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평가란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여, 남겨야 할 기록인지 버려야 할 기록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행위라 할 수 있다(Reed 1993). 버려야 할 기록인지, 당분간 남겨두어야 할 기록인지, 영구보존해야 할 기록인지의 판단은 평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성공적인 평가의 수행은 업무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가 있는 기록만을 남겨,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이 반드시 남겨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TNA 2012a, 5).

이러한 맥락에서, Ham(1975, 5)은 평가란 미래에 제공할 정보의 관점으로 동시대 인류의 경험을 대표하는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로서, 기록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 지적인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ISO15489-1 1판에서는 ‘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표준 제정에 참여했던 각국의 전문가들이 ‘평가의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에 대한 기록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운영 목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신 “개념을 설명하고 단어를 생략”하는 중재안이 제시되었다(Healy 2010, 101).

하지만, 2016년 개정된 ISO15489-1 2판은 하나의 장을 할애하여 ‘평가’를 규정하며, 그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다.²⁾ 개정된 표준은 평가를 “어떤 기록

이 생성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평가의 적용범위를 생성 후,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생성 이전의 기록까지로 확장시킨 것이다. 어떤 기록을 만들고,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부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기록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평가의 범주에 속한다. 다시 말해, 평가는 기록의 전생애와 함께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덧붙여, 표준은 기록관리의 필수적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맥락, 활동, 위험 등의 분석을 평가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업무 성격과 법, 자원, 기술 설정의 이해도 평가 영역의 활동으로 간주한다(ISO15489-1: 2016, 7.1.).

2) 평가 시기의 이동

이러한 평가 개념의 확장은 디지털 시대 기록관리 활동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장기적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록은 이전의 전통 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록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형식의 빠른 변화와 노후화라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작은 오류에도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기록 생성 당시의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보존전략 없이는 장기적 이용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디지털 기록의 태생적 특성이다.

종이 기록을 단순 디지털화한 형태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세트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데이터세트 기록은 여러가지 기능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활용된다. 이러한 환경은 기록 생애주기 개념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생애주기에 따른 전통적 평가방법의 유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기록 생애주기의 매우 이른 시점에 기록의 가치를 결정해야 할

2) ISO15489-1 2판, 제7장 ‘평가’는 7.1.일반, 7.2.평가의 범주, 7.3.업무활동의 이해, 7.4.기록요건의 결정, 7.5.기록요건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록의 핵심 맥락을 유지하고, 기록의 효율적, 효과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TNA, 2013b, 3). 즉, 디지털 기록을 장기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이 업무 활용을 위해 필요한가, 그리고 해당 기록의 영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정리가 무엇인지”가 기록관리 과정의 가장 첫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Helen 2004, 4). 종이로 대표되는 전통 매체에 담긴 기록의 경우, 기록의 생성과 출처에 대한 정보 획득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부분 육안으로 필수 정보에 대한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물리적 객체가 아닌 논리적 객체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록의 경우, 출처와 맥락의 파악을 위해서 적절한 메타데이터와 기술, 관리 이력에 대한 부가적 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내용, 구조, 맥락이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기록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은 필수적이다. 생산 이후, 뒤늦게 이를 파악하기는 난망하기 때문이다.

3) 평가 방법의 변화

디지털 시대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 분석을 통한 평가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 파일별 평가방식만으로는 디지털 시대 기록의 총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력과 시간이라는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비실용적이다. 즉, 개별 파일의 평가에 기관의 자원을 투여하는 것은 시간 소모적이라는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TNA 2013b, 3).

반면, 기능 분석에 기반을 둔 거시평가 방식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해당 기록의 가치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디지털 기록 환경에서 거시 평가가 적합한 이유는 업무 및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을 식별하는 지침로서, 정부 또는 기관 전체의 기능 분석을 통해 중요 기능에 의해 생성된 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NA(2012a, 8)는 거시평가를 통해, 전자기록시스템에서

생성된 파일 플랜에서 잠재적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영역을 식별하며, 디지털과 종이 형식의 조합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기록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디지털 기록 시대를 맞이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주요 기능과 업무 절차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시평가를 공공기록의 주된 또는 보조적 평가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4) 평가 주체의 확대

디지털 시대 기록평가 개념의 확장은 시기와 범주라는 관리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가의 주체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시민들이 디지털 기록을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확산,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평가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경래 2019, 56-57). 디지털 기록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기록의 연결성과 복잡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기록전문가만이 참여하는 평가로는 기록의 가치를 온전히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영국도, 공공기록 평가에 있어 기록 생산자, 기록전문가를 넘어 관련 업무의 이해관계자, 정보처리전문가 등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록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인 OSP의 수립과정에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TNA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최재희 2017, 53).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디지털 시대의 기록평가는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록의 생애가 다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기록 관리의 전과정에서 수행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의 범주도 다양한 전문가 영역, 나아가 시민사회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세기까지 공공기록의 근간이 되었던 종이기록을 평가했던 절차와 방법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생애주기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평가와 파일별 가치평가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록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평가업무를 출발점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4.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

1952년, 국무차관을 지낸 제임스 그리그(James Grigg) 경은 재무장관과 TNA의 전신인 공공기록사무소(Public Records Office, 이하 PRO) 관장으로부터 정부기관마다의 방대한 비현용 기록 보존을 둘러싼 문제점의 조사, 보고 및 법제도와 실무에서의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년 후인, 1954년, 의장인 자신의 이름을 따른 일명 ‘그리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모든 권고안은 영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고, 1958년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의 근간이 되었다(Turner 1992, 73; TNA 2012a). ‘그리그 보고서’가 제안한 공공기록의 평가 체제, 일명 ‘그리그 시스템’은 이후, 영국의 기록평가 이론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TNA는 종이 기록 환경에서 탄생한 ‘그리그 시스템’이 디지털 기록으로 변경된 기록관리 환경에서 가지는 명확한 한계를 인식하고, 2004년 ‘평가정책(Appraisal policy)’을 통해, 대안적 평가 정책의 개발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디지털 기록정보의 용량, 확산성, 복잡성의 증가는 ‘그리그 시스템’의 파일별 접근 방식 실행에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을 요구하고,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TNA(2012b)는 향후 상당 기간, 이관받을 기록의 대부분이 여전히 종이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리그 시스템’ 평가 방식을 종이기록의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정책문과 지침 등을 통해 거듭 설명되고 있다. 평가와 관련된 TNA의 주요 문서로서는 ‘평가정책’(2012a), ‘평가정책: 배경문-’그리그 시스템’ 이후(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the ‘Grigg System’ and beyond)’(Mercer 2004), ‘기록수집정책(Records collection policy)’(2012b), ‘평가보고서 템플릿(Appraisal report template)’(2013a),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Best practice guide to appraising and selecting records for The National Archives)’(2013b), ‘평가보고서 작성법: 평가보고서 템플릿 작성 지침(How to compile an appraisal report: Guidance on completing the Appraisal report template)’(2013c), ‘평가란 무엇인가?(What is appraisal?)’(2013d) 등이 있다. 이들 TNA 정책과 지침에 나타난 평가의 시점, 주체, 기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평가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리그 보고서’에 따른 평가 체계는 기록 생산 5년 후 지속적 업무가치에 대한 1차 평가, 25년 후 영구보존가치에 대한 2차 평가, 30년 후 이관을 기본 구조로 한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기록 평가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행정적 가치와 역사기록으로서의 영구적 가치를 최종 판단했던 관행이 그 실효성을 상실했음을 인식하고, 평가가 기록관리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나 수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전자기록의 경우, 파일 플랜을 통한 기록의 생성 이전, 처분이 이미 첨부된 폴더의 파일링을 통한 생성 시, 준현용 기록의 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시점, 영구적 저장장치로의 마이그레이션 시점에 반드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록의 평가는 생성 이전 또는 생성된 후 가장 이른 시점에 실행되어야 한다(TNA 2013b, 3; 2013d, 5). 반면, 종이 기록의 경우, 현재 그리그 시스템의 평가 시점을 유지하지만, 기존보다 이른 시기의 2차 평가를 권장한다. 2013년 ‘공공기록법’ 개정에 따라, 30년 규정이 20년으로 축소됨에 따라,³⁾ 20년 규정이 안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까지 이관받아 처리해야 할 기록의 양이 연간 약 2배 가량 늘어,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기록을 평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진다. ‘그리그 시스템’에서 1차 평가는 각 기관의 업무 단위 또는 기관 기록관의 1차 평가자 그룹이 수행하며, TNA의 감독 아래 기관의 2차 평가자 그룹이 2차 평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록을 직접 생산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록생산자 또는 관리자만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관리자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Jenkinson(1937, 123-124; 149-151)의 주장과, 그 대척점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기초를 둔 기록평가를 논했던 Schellenberg(2003, 133)의 미국식 기록가치이론이 ‘그리그 시스템’에서 기묘하게 절충된 것이다(최재희 2017, 51). 하지만 ‘그리그 시스템’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그 시스템’으로부터의 전환이 선언된 이후에도, 업무 담당 개인 또는 집단은 여전히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기록 환경의 거시평가에서 TNA의 주도적 역할 강화와 평가 주체의 확대는 불가피했다. 당대의 모습을 담아낼 특정 기록에 대한 결정에는 조직 또는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록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집단적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와 영구기록적 목적 모두를 위한 기록의 분석에는 과거와 현재의 업무 사용자, 고객관리자, 평가자 등의 집합적 노력이 필수적이다(TNA 2012a). TNA(2013d, 5)는 효과적인 평가 원칙의 하나로 참여(engagement)를 제시하고 있다. 기록의 가치 결정에는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모든 업무 영역으로부터의 조언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를 포함하는 운영과정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록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스템 전체에 다른 보유 기간을 적용하는 데는, IT, 정보 보증 및 고위 관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도움이

3) Public Records Act 1958, section 3(4).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거시평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리그 보고서’와 2004년 ‘평가정책’ 모두 기록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업무 가치인 1차적 가치와 광범위한 미래 사용자의 역사 연구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인 2차적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평가정책’은 ‘그리그 시스템’이 파일별 평가에 기초했던 것에서 벗어나, 거시평가를 평가 원칙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개별 문서 또는 파일 수준이 아닌, 정부 또는 기관 수준에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시평가는 업무와 영구보존의 목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정부 또는 기관의 기능 분석을 요구한다.

파일별 내용 검토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역사적 관점의 고려 없이, 가장 중요한 기능에 의해 생성된 기록을 식별하는 거시평가 방식의 채택은 전통적으로 기록의 출처와 내용을 영구기록적 가치 식별의 준거로 삼았던 TNA의 평가 업무에 거대한 변화였다. 다만, TNA는 거시평가를 예비적 단계로 설정하고, 영구기록적 가치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정책’과 ‘기록수집정책’에 제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 분석

TNA는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선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선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평가정책’, ‘기록수집정책’,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 등의 정책과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정부 기능 또는 정부 전체에서 발견된 일반적 유형의 기록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인 OSP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TNA는 공공기관이 TNA로 이관하는 기록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감사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스스로의 기록평가 과정을 철저히 기록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평가보고서(appraisal report)’, ‘시리즈 수준 평가 설문지(series-level appraisal questionnaire)’ 등의 평가 문서를 통해 선별 기준, OSP 번호, 선별 기록에 적용된 기타 평가지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가 기준

TNA(2012b; 2013b)의 ‘기록수집정책’과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에 나타난 영국 공공기록의 일반적 평가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영국 공공기록 일반 평가 기준

| 기록수집정책 |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 |
|--|--|
| 1. 영국 중앙정부, 잉글랜드, 웨일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및 법률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 연구 및 기타 주요 증거, 정책 검토 및 평가에 관한 기록 • 목표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정부의 주요 기능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록이 포함된, 정책과 법률의 해석 및 구현에 대한 기록 • 조약 및 국제 협정을 포함하여,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정부의 전략적 기능 및 의무의 세부 변화 기록 • 영국 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록 • 국제 관계 및 국방에 관한 중요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외교 정책, 치안 유지, 망명 및 기타 법적 사례, 병력 배치, 예산 책정, 외환 개입 등) 기관이 주도했던 영국 또는 국제적 사건 및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정책 결정의 기록 1.2 (백서, 녹서, 법안, 법률, 조항에 대한 참고사항 정책 집단 또는 위원회 등) 기관이 주도한 주요 입법 개발을 보여주는 기록 1.3 행정명령 등 기관이 주도했던 보조 입법 개발을 보여주는 기록 1.4 기관이 주도했던 법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주요 기록 1.5 (선례를 남기거나 광범위한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친 결정 등) 기관이 핵심 기능을 수행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기록 1.6 (밀레니엄 돔 프로젝트, 영국국립도서관 신축 프로젝트 등) 비용, 위험, 영향의 관점에서 특별히 혁신적이거나 또는 중요했던 프로젝트의 기록 |

| 2.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또는 사건에 대해 식별 가능한 영향을 미쳤거나 관련 비용, 위험 또는 발생된 영향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내각 위원회, 관리 위원회 및 기타 프로젝트 또는 공공영역 워킹 그룹의 회의록 및 문서 • 정부조직 변화(부처 및 기관의 생성, 합병, 해산)와 법률 정비를 포함한 국가 조직 구조 개편 세부사항 기록 • 영국 정부와 위임된 행정부, 의회 또는 군주의 법률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 위원회, 재판소 및 장관 및 공무원의 의사결정 조사 심리 또는 공공 정책 변경 권고사항에 대한 기록 | <p>2.1 내각 위원회, 장관급 위원회 등 고위 거버넌스 기록: OSP 35* 참조</p> <p>2.2 2010/11년 공공조직 개혁 프로그램에 따른 최근 정부조직 변경 등 기관의 해산, 생성, 합병을 보여주는 기록: OSP 24** 참조</p> <p>2.3 영국철도의 민영화 등 조직 또는 기능이 어떻게 민영화/국영화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p> <p>2.4 증거, 녹취록, 보고서 등 특정 공익 또는 정책,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가졌던 재판, 위원회, 조사, 심리에 대한 기록</p> <p>2.5 위임 행정부와의 정부 관계 등 헌법적 관계</p> <p>2.6 정당 및 선거구 기록과 같은 비공공 기록(OSP 12*** 참조)이 아닌, 국무장관/장관이 개입했던 논의/조치의 기록</p> <p>2.7 주요 기관 기능/구조의 생성/개발을 반영한 기록</p> |
| 3. 시민 생활과 국가의 상호작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민 및 커뮤니티의 이해와 공공 지식에 크게 기여하는, 개인, 그룹, 조직, 장소의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안 파일, 데이터세트 및 기타 기록 • 중요 동시대 관심사 또는 논란이 된 개인, 국가, 국제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 • 모든 영국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기관, 일부 비정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 <p>3.1 개인 또는 집단(OSP 30**** 참조), 장소 또는 조직(인구조사기록 등의 사안 파일 또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집계된 데이터</p> <p>3.2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고, 선례를 만들거나, 논란을 일으키고, 이미 알려진 것을 추가하는 중요한 사건/인물/집단을 보여주는 기록(OSP 48***** 참조)</p> <p>3.3 OSP 27*****에 따른 영국 정부 부처 및 기관 웹사이트</p> |
| 4. 물리적 환경과 국가의 상호 작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부 제안이나 정책 영향의 상세한 기록 • 토지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정부의 재산, 권리 및 의무를 보여주는 기록 | <p>4.1 (주변 지역 원자력발전소 건설 결정의 영향 등) 정책/제안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한 기록</p> <p>4.2 구제역 위기 등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대한 기록</p> <p>4.3 (템즈 장벽, 영불해협 터널, 올림픽 개최지 등) 영국 정부 책임(숙성 및 주요 자산)을 수립하거나 재확보하는 주요 기록</p> |

5. 항상 선별해야 하는 기록

- 5.1 1660년 이전에 작성된 모든 기록(1958년 공공기록법 요건)
- 5.2 국무조정실 공직자 이력 작성 시 참고사항 또는 인용된 문서

6. 선별하지 않아야 할 기록

- 6.1 (기관 간 배포된 정책 또는 토론 문서의 사본 등) 복사 문서
- 6.2 단기간 가치의 참고 정보
- 6.3 (송장, 영수증 등의 재무 기록 및 고충처리서 등의 인사 기록 등) 운영 또는 행정 기록
- 6.4 (해당 기관이 사무국이 아니었던 조회 기록, 타 정부기관이 주도했던 정책문서 등) 기관 또는 지부가 주도하지 않은 기록
- 6.5 신문기사 모음/간행물 사본
- 6.6 기준 3.1. 또는 3.2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또는 독립적 사안 파일
- 6.7 (의회 의사록, 발표된 조언 및 지침, 연차보고서, 의회 문서 등) 다른 곳에서 획득되었거나 또는 이미 TNA에 보존된 기록/정보
- 6.8 비공표 기록
- 6.9 (재정 기록, 건강 및 안전, 핵폐기물처리 기록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법에 의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기록
- 6.10 최소 내용 또는 해당 내용이 이미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추가되지 않은 경우
- 6.11 기준 1,2,3,4에 따라 선별된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공적 서신
- 6.12 영국 정부 웹 아카이브에 온전히 획득되어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록

- * OSP 35 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 **** OSP 30 정부와 시민
- ** OSP 24 정부기구 및 공공 업무에 관한 기록 ***** OSP 48 사안 철
- *** OSP 12 정책 중앙 지휘 및 감독 1970~2000 ***** OSP 27 영국 중앙 정부 웹 사이트

TNA는 ‘기록수집정책’을 통해 TNA가 연구보존기록으로 수집, 보존해야 할 기록의 기준을 ‘영국 중앙정부, 잉글랜드, 웨일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치’,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시민 생활과 국가의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담은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은 동일한 4가지 유형에 ‘항상 선별해야 하는 기록’과 ‘선별하지 않아야 할 기록’이라는 2가지 범주를 추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치를 담은 기록에는 ‘정부정책 및 법률 개발 과정 기록’,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 연구 등의 기록’, ‘정책과 법률의 해석 및 구현 기록’, ‘정부의 전략적 기능 및 의무에 관한 기록’, ‘경제 운영에서

정부 역할에 관한 기록, '국제관계 및 국방 기록'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부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을 다룬 기록에는 '주요 회의록 및 문서', '국가 조직 구조 개편 기록', '영국정부와 의회, 군주의 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공적 의사결정 조사 기록' 등이 속한다. 셋째, 시민 생활과 국가의 상호작용 기록에는 '사안 파일, 데이터세트 기록', '중요 동시대 관심사 및 논란에 관한 기록',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비정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있으며, 넷째, 물리적 환경과 국가의 상호작용 기록에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부 제안 및 정책 영향 기록', '토지 소유자, 임대인으로서 정부의 재산, 권리, 의무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은 이상 4가지 범주의 포괄적 평가 기준에 더해, 각각에 해당하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OSP를 참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4가지 기준에 추가된 '선별해야 하는 기록'에는 1958년 '공공기록법'의 요건으로서, '1660년 이전에 작성된 모든 기록'과 '국무조정실 공직자 이력 작성 시 참고사항 또는 인용된 문서'가 포함되며, '선별하지 않아야 할 기록'에는 '복사 문서', '단기간 가치의 참고 정보', '운영, 행정기록', '기관이 주도하지 않은 기록', '이미 TNA에 보존된 기록', '신문기사 모음', '간행물 사본', '비공표 기록' 등이 해당된다.

2) 운영선별정책

앞서 논한 '기록수집정책',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 등에서 제시된 일반 평가 기준과 함께, 부처별, 기록유형별, 주제별 영구기록의 평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세부적 선별 정책이 OSP다. OSP는 '기록수집정책'에 규정된 기준을 개별 부처 및 기관의 기록 또는 기관 간 주제와 관련된 기록에 적용한다. 공공기록 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도구로 마련된 OSP는 기록 사용자, 전문가, 해당 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나온 조

언과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되고 수정된다. 일반적으로 OSP는 작성되는 시작점에서부터 공공 컨설팅의 대상이 된다. TNA가 작성한 각 OSP 초안은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으로 완성된다(이경래 2019, 74). 다만, 공식적인 검토 및 수정 주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체제에서 차지하는 OSP의 영향력은 실로 크다. 1998년 TNA의 영구보존기록 선별을 위해 마련된 ‘인수 정책(Acquisition Policy)’부터, 1999년 TNA가 아닌 다른 곳에 보존할 공공기록의 선별을 위한 ‘처분 정책(Disposition Policy)’, 2007년 ‘인수 및 처분정책(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그리고 이를 대체한 2012년 ‘기록수집정책’까지, 일련의 공공기록 평가와 관련된 정책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OSP의 생산과 운영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 3월 첫 번째 ‘OSP 1: 환경부 1970~1979’가 공표되었으며, 2019년 현재 60개의 OSP가 마련되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평균 6개의 OSP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 40개에 달하게 되었으나 2007년 이후, 새 OSP의 연간 도입은 이전의 절반 수준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OSP는 2016년의 ‘OSP 61: 웨일스 정부 2011~2016’이다.

OSP는 ‘중앙정부 및 법률 사안’, ‘국방, 보안 기밀’, ‘환경’, ‘재정 문제’, ‘법과 질서’, ‘해외’, ‘사회 및 교육’, ‘무역 및 산업’ 등 8개 영역의 주제로 크게 구분된다. 영역별 OSP 수를 살펴보면, ‘재정 문제’와 ‘무역 및 산업’ 영역에 각각 11개씩의 OSP가 있고, 다음으로는 ‘중앙정부 및 법률 사안’, ‘법과 질서’ 영역에 각각 9개, ‘환경’ 영역에 8개의 OSP가 있다. 그의 ‘사회 및 교육’, ‘국방, 보안, 기밀’, ‘해외’ 영역에 각 6개, 4개, 3개의 OSP가 속해 있다. 단 ‘OSP 27: 영국 중앙정부 웹사이트’는 ‘중앙정부 및 법률사안’과 ‘재정 문제’ 영역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OSP 35부터 OSP 39까지의 5개 OSP는 개별 기관 또는 고유 기능을 다루

고 있는 타 OSP와 달리, 전 정부기관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기록의 종류를 다루는 정책으로 ‘일반(Generic) OSP’라 불린다. ‘일반 OSP’는 번거로운 기관별 평가 없이 기관별 평가자가 일련의 기록 폐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공통 기능의 업무 분류 계획을 자동 폐기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Davies 2006, 8).

‘OSP 35: 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의 유형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유형을 식별하며, ‘OSP 36: 간행물 및 회색문헌’은 TNA 지침에 채택되었던 추가 자료로, 어디에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했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OSP 37’은 정보자유법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적용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OSP 38: 내부 운영 기록’은 인사, 금융, IT, 보안에 이르기까지 공통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OSP 39: 검사 기록’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수행한 검사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에 대한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OSP를 주제별로 정렬하고 제정연도 및 최신 개정연도를 확인한 목록이다.

〈표 2〉 TNA OSP 주제별 목록

| 주제 | OSP 연번 제목 | 제정 연도 | 개정 연도 | 평가보고서 |
|---------------------|---------------------------------|-------|-------|----------------------------|
| 중앙 정부 및 법률 사안 | 7 웨일스 오피스 1979~1997 | - | 2005 | 내무성 평가보고서 1953~2016 |
| | 7:Y 웨일스 오피스 1979~1997 (웨일스어 버전) | 2001 | 2005 | |
| | 12 정책 중앙 지휘 및 감독 1970~2000 | 2002 | 2013 | |
| | 20 중앙정보국 기록 | 2003 | 2005 | |
| | 24 정부기구 및 공공 업무에 관한 기록 | 2004 | 2005 | |
| | 27 영국 중앙 정부 웹사이트* | - | 2014 | |
| | 59 웨일스 정부 1997~2006 | 2013 | N | |
| | 60 웨일스 정부 2006~2011 | 2013 | N | |
| 61 웨일스 정부 2011~2016 | 2016 | N | | |
| 국방, 보안, 기밀 | 8 보안국 | 2001 | 2005 | 국방부 1963~2014 평가보고 서 |
| | 11 핵무기 정책 1967~1998 | - | 2005 | |
| | 14 국내 방어 및 비상 계획 1972~2000 | - | 2005 | |
| | 28 정부통신본부(GCHQ) 및 전임 기관 | - | 2006 | |

| | | | | | |
|---------|----|---|------|------|----------------|
| 환경 | 1 | 환경부 1970~1979 | 2000 | 2005 | 영국석탄공사 |
| | 2 | 영국왕립토지위원회(Crown Estate) 1975~1985 | 2000 | 2005 | (전 국립석탄위원회) |
| | 4 | 여가 목적의 시골지역의 사용 및 보존 1974~1983 | 2000 | 2005 | 총이기록 |
| | 10 | 영국의 자연 보호 1973~1991 | 2001 | 2005 | 1947~2004 |
| | 17 | 건축환경보존 1970~1999 | 2002 | 2005 | 평가보고서 |
| | 45 | 영국국립재생공사(English Partnerships) 1999~2006 | 2007 | N | |
| | 57 | 핵 폐기 관리국-1940년 이후 현장 기록 | 2013 | N | 수의학 의약품부 |
| | 58 | 환경청 (1996~2012) | 2012 | N | 평가보고서 |
| 재정 문제 | 9 | 재정정책 1971~1979 | - | 2005 | |
| | 15 | 중앙정부 지출통제 1969~1997 | - | 2005 | |
| | 22 | 영국 조폐국(Royal Mint) 기록 1975~2002 | 2003 | 2005 | |
| | 27 | 영국 중앙 정부 웹사이트* | 2004 | 2014 | |
| | 35 | 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 | 2006 | N | 정부 보험계리인 |
| | 36 | 간행물 / 회색 문헌 | 2006 | 2016 | 부처 평가보고서 |
| | 37 | 정보공개법 기록 | 2006 | N | 1870~2016 |
| | 38 | 내부 운영 기록 | 2006 | N | |
| | 39 | 검사 기록 | 2006 | N | |
| 법과 질서 | 42 | 부처별 법률부서 기록 | 2007 | N | |
| | 48 | 사안 철 | 2009 | N | |
| | 6 | 검사관과 관련되었거나 검사관이 작성한 기록 1970~2000 | - | 2007 | |
| | 16 | 보호관찰 기록 1965~2001 | - | 2005 | |
| | 21 | 형사사건재심위원회 기록 | 2003 | 2005 | |
| | 29 | 런던 경찰국 기록 | 2004 | 2005 | |
| | 32 | 개인 파산에 관한 법원의 조치 기록 | 2005 | N | |
| | 33 | 기업 부실에 관한 법원의 조치 기록 | 2005 | 2007 | |
| | 40 | 형사 법원 및 항소 법원(형사부) 기록 | 2006 | 2014 | |
| 해외 | 46 | 군법 및 군법회의의 관련 기록 | 2008 | N | |
| | 56 | 법무장관실 | 2012 | N | |
| | 13 | 영국 외교 관계 1973~1996 | 2002 | 2005 | |
| 사회 및 교육 | 23 | 영국 해외 대표 기록 1973~ | 2003 | 2005 | |
| | 44 | 유럽공동체 제2차 법안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개입 기록 | 2007 | N | |
| | 5 | 사회보장 관리 1979~1997 | 2000 | 2012 | |
| 사회 및 교육 | 8 | 해외에서 발생한 영국 시민의 출생, 사망, 결혼 등록 기록 | 2001 | 2005 | Ofqual** 평가보고서 |
| | 19 | 교육부 기록, 1974~1997 | - | 2014 | 잉글랜드 고등교육 기 |
| | 30 | 정부와 시민: 전자 사안철 및 데이터세트에 문서화된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 | 2005 | 2006 | 금위원회 평가보고서 |
| | 31 | 16세 이상 교육 1974~1988 | 2005 | N | 1992~2017 |
| | 55 | 연금규제국 기록 (2005~2011) | 2011 | N | |

| | | | | |
|------------|----|---|------|------|
| 무역 및 산업 | 3 | 산업 정책 1974~1979 | 2000 | 2005 |
| | 25 | 기업 규제 | 2004 | 2012 |
| | 26 | 민간항공 규제 1972~2002 | 2004 | 2006 |
| | 34 | 제한적 무역 관례 1956~2000 | - | 2012 |
| | 41 | 식품기준청에 의해 승계된 농업수산물부가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한 기록 | 2007 | N |
| | 43 | 경쟁 - 사안 철 1950~2008 | 2008 | N |
| | 47 | OFWAT*** 종이 및 전자기록 1989~2010 | - | N |
| | 49 | 1978년 이후 수출신용보증부 기록 | 2010 | 2015 |
| | 50 | 지역개발청 1999~2012 | - | 2012 |
| | 51 | 영국국립우체국(Royal Mail) 및 전임기관 기록 1969~2006 | - | N |
| | 54 | 식품기준청 2000.4.1.~2012.10.1. | 2012 | N |

- 제정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N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음

■ 일반 OSP

* 'OSP27 영국 중앙 정부 웹사이트'는 '중앙정부 및 헌법 사안'과 '재정 문제', 두 주제에 모두 속함

** 자격시험감독청(The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상수도서비스 규제국(The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OSP 작성에 있어 고정된 틀은 없다. 다만, 작성연도와 기관에 따라 유사한 또는 다른 목차와 양식을 가지고 있다. OSP 도입 초기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OSP들은 '기관(authority)', '범위(scope)', '책임(responsibilities)', 'TNA '인수정책' 또는 '인수, 처분정책'에서의 관련 수집 주제(relevant collection themes)', '기관의 주요 주제(key themes)', '파일링 시스템의 구조(structure of filing system)', '선별 정책의 이행(implementation of selection policy)'을 공통 요소로 하여 작성되었다.

'기관'은 전 OSP를 통틀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으로, OSP의 일반 목적과 검토 및 개정 방법을 소개하고, TNA 담당자와 부서의 이메일과 주소를 안내한다. <표 3>은 OSP 1의 '기관' 항목이다.

〈표 3〉 'OSP 1: 환경부 1970~1979'의 '기관' 항목

TNA의 '인수정책'은 정부 전반에서 OSP를 개발하겠다는 사무국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들 정책은 기술된 수집 주제를 개별 부처 및 기관의 기록에 적용할 것입니다.

OSP는 공공기록 선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작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기록 이용자, 보관 전문가, 해당 정책 부서의 경험, 새로 발굴된 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검토 주기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의견을 환영합니다. 검토 및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records-management@nationalarchives.gov.uk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인수 및 처분 정책 프로젝트 관리자, 기록관리부, TNA
Kew, Richmond, Surrey, TW9 4DU

'범위'는 해당 OSP가 포괄하는 기록의 범주를, '책임'은 해당 기관의 책임과 간략한 연혁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TNA 인수정책' 또는 'TNA 인수, 처분정책'의 '관련 수집 주제' 항목에서는 TNA의 평가, 선별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책에 나타난 해당 기관 관련 주제를 확인한다. '주요 주제' 항목은 각 OSP의 가장 고유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당 기관 또는 기능의 세부적 주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SP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작성된 OSP들에는 이들 공통적 요소에 기관의 역사, 배경 및 기능, 평가 및 선별의 원칙, 선별 기준, 처분 주제 등의 요소들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SP의 목차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0년대 후반의 일이다. 2007년의 OSP 45에 이어, 연번 47부터 58까지의 OSP들은 배경 정보를 공통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특히, OSP 47, OSP 49, OSP 51, OSP 54, OSP 55, OSP 56, OSP 58은 '기관', '섹션1: 배경정보', '섹션2: 과거에 TNA로 이관된 자료', '섹션3: 생산된 기록의 분석', '섹션4: 기록선별을 위한 제안', '섹션5: 부가 정보와 후속 조치'라는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OSP에 비해, 배경정보와 과거 이관된 기록에 대한 정보 등 맥락정보에 대한 서술을 별도의 섹션으로 두어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평가 프로세스

TNA의 ‘평가정책’(2012a), ‘기록수집정책’(2012b), ‘평가보고서 템플릿’(2013a),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2013b) 등의 정책 문서를 통해 나타난 영국 공공기록의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기관 수준의 평가

저시평가라 불리는 기관 차원의 평가에서는 보존을 위해 어떤 기록군 또는 정보 범주를 선택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결정에 있어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기관의 주요 역할이 되는 핵심기능과 기관이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기능에 주목한다. 또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기관은 전체 조직을 한번에 분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능과 업무 영역을 평가한다.

기관의 기록을 적합하게 관리할 책임은 기관 스스로에게 있다. 따라서, 기관은 산하 조직이 어떤 기록을 생성,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업무와 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얼마나 오래 보존해야 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TNA는 기관의 기록 평가, 선별 결정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 템플릿’을 제공한다. 기관이 작성한 각각의 평가보고서는 TNA ‘기록 결정 위원회(Records Decision Panel, 이하 RDP)’에 의해 검토, 승인된다.⁴⁾ 이와 같은 TNA의 승인절차는 영국 정부 전반에서 평가, 선별에 대한

4) RDP는 ① 기록 수집정책 및 평가정책의 수정 및 업데이트, ② OSP(신규 및 실질적으로 수정된 정책) ③ 평가 보고서(신규 및 실질적으로 수정된 보고서) ④ 현행 정책에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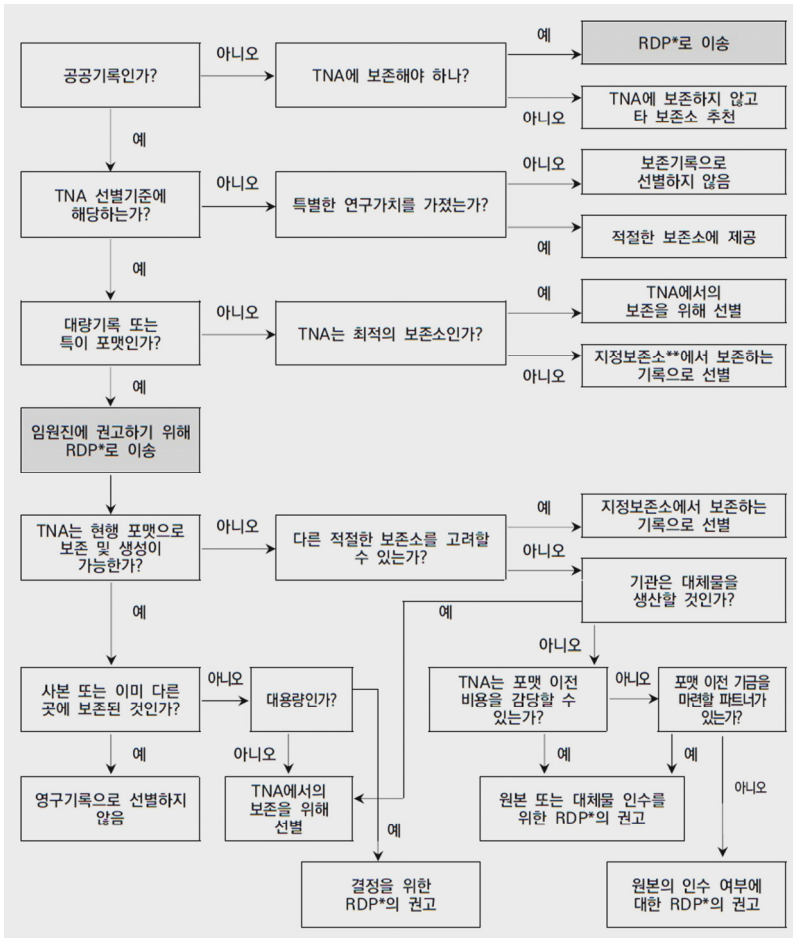
〈그림 1〉은 RDP를 포함한 평가프로세스를 의사결정나무로 도식화한 것이다(TNA 연도미상a). TNA의 보존 기록으로 선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이면서, TNA 선별기준에 해당하고, 대량기록 또는 특이 포맷이 아니어야 하며, TNA가 최적의 보존소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보존기록으로 선별하지 않거나, 지정보존소(places of deposit)⁵⁾ 기록으로 선별 또는 다른 적정한 보존소에 제공된다.⁶⁾ TNA 선별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이라 하더라도, 대량기록 또는 특이 포맷의 기록인 경우, 특별팀(Executive team, 이하 ET)의 권고를 위해 RDP로 이송된다. 이송된 기록은 TNA의 현행 포맷

벗어난 선별 결정 ⑤ 선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언이 필요한 컬렉션 ⑥ ‘공공기록법’ section 6에 따른 기록 시리즈 증가의 종결 및 기록 폐기 ⑦ ‘공공기록법’ section 4(1)에 따른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기록 시리즈의 보관 ⑧ ‘공공기록법’ section 4(3)에 따른 TNA으로부터 보존소로의 기록 이관 ⑨ 역사적 의의가 있는 비공개 기록의 제공. ⑩ 접근, 저장, 보존이 어려운 특이 유형의 기록 등을 포함한 선별 문제를 다룬다(TNA 연도미상b).

- 5) 공공기록법 section 4(1)에 따라, 국무장관은 공공기록의 지정보존소로서 적합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선정하여, 특정 기록의 이관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권한은 TNA 대표에게 위임되며, 아카이브 부분 개발 책임자가 대신하여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아카이브, 특정주제 관련 전문수집기관, 역사기록 보존기관 등이 지정보존소로 지정된다. 첫째, 지방정부 아카이브 서비스는 하급법원 기록, 지방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기록, 지방 교도소 기록, 지방 기관 및 위원회 기록 등 지역 관련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지정보존소로 빈번히 지정된다. 둘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소수의 전문 수집기관들이 지정보존소로 지정된 예로는,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이 대표적이다. 셋째, 영국지질조사소(British Geological Survey),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등의 기관들은 자관이 보유한 역사기록으로 인해 지정보존소로 지정된다. 이들은 자관 내에 기록을 보유하고 공적 접근을 제공한다. TNA는 이들 기관이 내부적 목적으로 기록에 빈번히 접근할 필요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또는 기록의 해석과 관리에 TNA가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 지식, 자원이 요구될 경우에 한하여 지정보존소로 지정한다. 이러한 잠재적 지정보존소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보존 및 접근 표준에 대해 TNA의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지정 후에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정여부가 갱신된다. 접근 또는 보관 방식의 영구적 또는 임시적 변경은 반드시 TNA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TNA 2012b, 10-11).
- 6) 보존 및 접근 제공을 위해 전문시설이 필요한 특정 기록은 다른 영구보존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전문시설은 TNA를 대신하여 이러한 기록을 보유하고,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며, 합의된 약관에 따라 보존, 이용한다. 영국 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TNA를 대신하여 아날로그 필름과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TNA 2012b, 10).

으로 보존 및 생성이 가능한 것인지, 사본이 존재하는지, 대용량인지, TNA 가 포맷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기록으로 선별하거나, 영구기록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1〉 TNA RDP 의사결정나무



* RDP : Records Decision Pane ** Public Records Act 1958 section 4(1)

(2) 평가 프로세스 2단계 : 시리즈 평가

기관의 평가에는 영구보존적 가치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는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관들은 시리즈가 반영하고 있는 기능, 포함된 기록의 유형, 업무 영역 또는 기관이 해당 기능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능 및 시리즈의 모든 기록 또는 대부분의 기록이 높은 가치로 간주되는 경우, 전체 시리즈를 선별하거나, 또는 기록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시리즈를 선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기록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경우, 시리즈의 일부만을 선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영구보존 가치를 지니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리즈는 처분 결정을 문서화한 후, TNA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시리즈 수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파일 수준에서 추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TNA는 각 기관이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 결정을 문서화할 수 있는 템플릿인 '시리즈 수준 평가 설문지(Series-level appraisal questionnaire)'를 제공한다. 선별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적절한 기록 선별 기준을 나열해야 하며, 각 기록의 범주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 완성된 '시리즈 수준 평가 설문지'는 TNA 정보관리 컨설턴트가 승인한다.

(3) 평가 프로세스 3단계 : 파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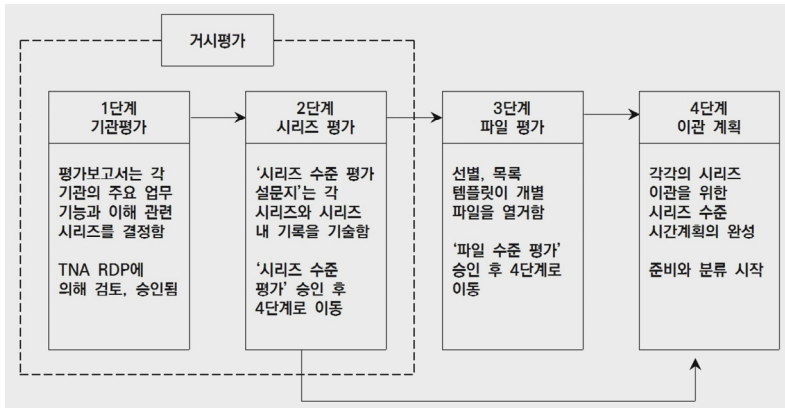
기관은 가능한 한 파일이나 문서 수준 평가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즈 내에 파일 형식이 혼합된 경우, 시리즈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기타' 또는 '일반' 등 파일 제목이 제한된 경우에는 파일 수준의 평가를 실시한다.

파일 평가에는 혼합 시리즈 검토, 선별 기준 및 파일 제목 비교, 조사 및

파일 검토, 파일별 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정책 파일과 사안 파일이 혼합된 시리즈의 경우, 사안 파일은 OSP 48에 따라 분리하고 검토해야 한다. 정책 파일은 앞선 시리즈 수준의 접근법 또는 다음의 평가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기록수집정책, 일반 선별 기준, OSP, 기관 선별 기준 등의 선별 기준을 파일 제목과 비교하여 파일을 평가한다. 파일 제목이 불량하거나 파일의 내용이 파일 제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셋째, 초기에 수행하는 파일 제목 평가를 통해, 위원회 기록과 같은 분명한 선별 가치가 있는 기록을 걸러내거나, 간행물 등을 선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나머지 파일은 파일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넷째, 각각의 개별 파일은 관련 선별 기준을 사용하여 그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이상의 평가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⁷⁾

<그림 2> 평가 및 선별 절차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앞서 단계별로 논한 평가 및 선별 절차를 중

7) TNA(2013b, 6)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의 프로세스 도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기관평가와 2단계 시리즈 평가는 넓은 의미의 거시평가로 볼 수 있다. 1단계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보고서가 각 기관의 주요 업무 기능과 이해 관련 시리즈를 결정하고, 이는 TNA RDP에 의해, 검토, 승인된다. 2단계 시리즈 평가에서는 '시리즈 수준 평가 설문지'를 통해 각 시리즈와 시리즈 내 기록을 기술하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이관 단계로 바로 이동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행되는 3단계는 선별, 목록 템플릿으로 개별 파일을 열거하는 단계로, 승인받은 후 이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 디지털 시대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디지털 기록에 최적화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시기를 기록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기로 조정하고, 평가의 참여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거시평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문과 세부적 지침을 통해, 공공기록을 다루는 여러 유형의 기관들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TNA는 정책문과 세부적 평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록 평가에 있어 자신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가적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평가를 비롯한 기록관리의 준거를 법령에 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기록수집정책'이 가장 포괄적인 평가 기준을 담고 있다면, '평가 및 선별 모범 실무 지침'은 좀 더 상세한 기준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고, OSP는 기관, 기록유형, 주제에 따른 세부적 선별 기준을 제공하여, 공공기록 평가체제 실행의 준거가 되고 있다. 상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하위 단위의 정책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다시금 하위 단위의 세부 기준을 근거로 상위 단위의 정책이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정책과 지침의 수립과 개정 과정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며, 공적 검토의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공공기록의 평가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이야 말로, 평가의 신뢰성, 나아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우리나라 기록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적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의 적절한 평가 시점은 기록 생애주기의 매우 이른 시점, 사실상 기록이 생성되기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기록 생산단계의 단위과제 신설 및 변경에 있어 기록전문가의 역할이 사라졌다.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기록관리의 논리보다는 일반 행정행위의 관점이 앞서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어떤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기록의 생성과 획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기록의 ‘평가’라 한다면, 우리 기록전문가는 평가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설문원(2013, 234)과 최재희(2014, 167-168)는 「공공기록관리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록폐기를 목적으로 한 평가가 사실상의 ‘재평가제도’이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물 없는 목록 평가, 평가 대상의 방대한 양, 짧은 평가 시간, 참여 민간위원의 낮은 전문성 등 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 해묵은 문제들은 좀체로 개선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한 요식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가 사전적 평가의 강화이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기록평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후적 재평가는 초기 평가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기록전문가 주도의 사전적 평가를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전문가는 BRM 담당부서로부터 단위과제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되찾아오고, 사전 평가에 기록관리 관점의 통제 권

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관별 평가 없이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일련의 기록 폐기기준을 적용하여, 공통 기능의 업무 기록을 자동 폐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TNA의 '일반 OSP' 정책은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한다.

둘째, 거시평가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보존 기간에 대한 법률 규정은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5조 제3항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1항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별표 1은 기록물의 7가지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존기간 준칙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이후 보존기간 준칙의 시행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준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은 첫째, 개별 기준이 모호하며, 둘째, 기록의 내용을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디지털시대 기록평가의 준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영구보존 대상기록물 25가지 모두 '~필요한', '~관한', '~중요한' '자료' 또는 '기록물'로 나열되어 있다. 준영구 보존의 6가지, 30년 보존의 5가지 유형 모두 마찬가지다. 이는 단위과제별 기록보존기간 책정을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준과 상충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5, 16). TNA는 디지털 기록의 평가에서 파일별 평가, 즉 기록의 내용에 기반한 평가를 예외적인 경우로 두어, 가능한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록평가체계는 외관상 거시평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법령과 표준은 평가의 기준을 각각 기록물과 단위과제로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다. 기능평가의 체제 안에서 내용 평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양과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기록의 시대에서 거시평가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내용 기반의 파일별 평가는 지양되고 있다. 우리의 평가 기준도 거시평가에 맞게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7가지 보존기간 구분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물리적 객체를 위한 분절된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마련된 보존기간의 구분은 논리적 객체인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록 환경을 고려하여, 영국의 ‘공공기록법’이 TNA로의 30년 이관 원칙을 20년으로 개정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공공기록의 평가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는 설명책임성을 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다. 공공기록은 공공기관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당대 그리고 미래의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 기록을 생성, 획득하고, 폐기 또는 보존하는 단계마다의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준거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 업무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평가의 판단이 되는 준거를 시민과 공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평가 업무, 다시 말해, 어떤 기록이 어떠한 이유로 남겨졌고, 또 버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적 활동이다. TNA가 다양한 정책문과 지침서를 통해 기록평가의 기준과 과정을 거듭 설명하는 것은 평가 실무자를 위한 것뿐 아니라, 시민들에게서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며, OSP를 공적 자문의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7. 맺는 글

평가는 변한다. 민주주의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평가의 주체, 관점,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다.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현실에서 실험되고 구현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모색의 한가운데 기록전문가들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결성과 복잡성이 폭증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바다에서 예술에 가깝다고 이야기되는 평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만났다.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원칙인가? 객관성도 불편부당성도 아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절대적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록과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을 둔 독립성이다.

기록전문가의 전문성은 시민에 복무해야 하며,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때야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시민에 복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남기는 기록으로 증명된다. 우리가 애써 지키고 보존한 기록은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들 자신이다. 평가가 기록전문가에게 돌도 없는 핵심적 업무인 이유는 이것이다. 평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산을 통제하고, 폐기를 관리하며, 영구적 가치의 기록을 남긴다. 이는 당대와 후대의 시민들을 위한 기록전문가의 책무다. 수월한 길일 리 없다. 당장에 해결될 일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평가를 통해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 기록평가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실천에 함께 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1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2). NAK 3:2015(v.2.2).
-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별 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3-40.
- 김명훈. 2008.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세계 각국 평가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 평가전략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9(2), 95-130.
- 김명훈. 2018. 기록 평가의 표준화: ISO 15489 개정판에서의 평가 원리 및 절차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45-68.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325-357.
- 나영선. 2008.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89-104.
- 서은경. 2005. 국립기록원 기록물평가정책 비교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6(4), 1-22.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 유혜림. 2007. 전자기록 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래. 2019. 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시민참여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0, 49-88.
- 이승억. 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41-72.
- 이승억.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119-152.
- 최재희. 2012. 주요 외국의 기록물 평가 체계와 시사점. 기록인, 21, 58-61.
-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 최재희. 2015. 기록물 평가 정책과 대량동종 기록물 선별: 영국 TNA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인』, 33, 26-39.
- 최재희. 2017. 영국 공공기록물 선별체계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 『역사교육』, 35-58.
- Davies, Howard. 2006. Selection policies for all: the advent of generic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for use across government. *RecordKeeping*. TNA, 7-8.
- Ham, F. G. 1975.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January, 5-13.

- Healy, Susan. 2010. ISO 15489 Records Management: it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Records Management Journal*, 20(1), pp.96-103.
- Jenkinson, Hilary. 1937.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London : P. Lund, Humphries & co., ltd.
- Mercer, Helen. 2004. 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The 'Grigg System' and Beyond. 검색일: 2019. 9.10. https://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background_appraisal.pdf
- NARA. 2007. NARA Directive 1141, Appraisal Policy of the NARA. 검색일: 2019. 9.10. <https://www.archives.gov/files/records-mgmt/publications/appraisal-policy.pdf>
- Reed, B. 1993. 'Appraisal and disposal', In Judith, Ellis, (eds.), *Keeping Archives*. Australian Society of Archives, 157-206.
- Schellenberg, T.R. 2003. *Modern Archives Principles & Techniques* With a new introduction by H. G. Jones. Chicago: SAA.
- TNA. 2012a. Appraisal Policy.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appraisal_policy.pdf
- TNA. 2012b. Records collection policy. 검색일 2019.9.1. <https://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records-collection-policy-2012.pdf>
- TNA. 2013a. Appraisal Report template.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appraisal-report-template.doc>
- TNA. 2013b. Best practice guide to appraising and selecting records for The National Archives.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best-practice-guide-appraising-and-selecting.pdf>
- TNA. 2013c. How to compile an appraisal report: Guidance on completing the Appraisal report template.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how-to-compile-an-appraisal-report.pdf>
- TNA. 2013d. What is appraisal?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what-is-appraisal.pdf>
- TNA. 연도미상a. Decision tree for Records Decision Panel.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bout/our-role/boards-and-advisory-groups/records-decision-panel/>
- TNA. 연도미상b. Records Decision Panel. 검색일 2019.9.1.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bout/our-role/boards-and-advisory-groups/records-decision-panel/>
- TNA. 연도미상c. 검색일 2019.9.1. Transfer Template.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transfer-template.xlsx>

- Tschan, Reto. 2002. A Comparison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on Appraisal. *The American Archivist*, 65, 176-195.
- Turner, Jane. 1992. *A study of the theory of appraisal for selection*. M.A. thesis. School of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Williams, Caroline. 2006. *Managing Archives*. Oxford: Chandos Publishing Limited.